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소병훈·안태준·허 영

어기구 · 박희승 · 정성호

안호영 • 박지원 • 정춘생

김교흥 • 이원택 • 서영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.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인 보호조치는 부재함.

참고로, 미국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 하고 있음.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).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의 제목 중 "금지"를 "금지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상담, 치료,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해당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·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 중 "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

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

2.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

제20조제1항 중 "제4조의5를"을 "제4조의5제1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의5(피해자에 대한 불이익	제4조의5(피해자에 대한 불이익		
처분의 <u>금지</u>) (생 략)	처분의 <u>금지 등</u>) <u>①</u> (현행 제목		
	외의 부분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		
	는 피해자가 상담, 치료, 수사		
	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과 관련		
	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		
	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		
	해당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		
	수 있다. 이 경우 피해자를 고		
	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로부터		
	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		
	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		
	<u>야 한다.</u>		
<u><신 설></u>	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유급		
	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		
	<u>있다.</u>		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		
	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		
	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		
	<u>한다.</u>		
제16조(비밀 엄수의 의무) <u>긴급전</u>	제16조(비밀 엄수의 의무) <u>다음</u>		
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

의_	장이	기나	이를	보조	하는	_ 자
<u>또</u>	느 -	1 직	에 9	<u>있었던</u>	자는	ユ
직-	무상	알게	된	비밀을	을 누설	설하
여/	서는	아니	된다	7.		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제20조(벌칙) ① <u>제4조의5를</u> 위반 저 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 략)

1. 제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
따라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
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
수행하였던 자
2.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
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
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
<u>자</u>
세20조(벌칙) ① <u>제4조의5제1항을</u>

② (현행과 같음)